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제도 및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 계약이 재결된 판매인에 대하여 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권한을 시장으로 일원화함.
- 판매인의 명칭과 판매소의 위치 변경에 대하여 사유발생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완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등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제도 및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입증지 판매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